<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406호>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 **선정규모:** 100개 기업 이내

* 선정심의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2 신청대상

□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주 요 내 용
1 전문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부·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3 기술혁신전략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4 R&D역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2차)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 · 접수기간) 2019. 10. 10.(목) 09:00 ~ 2019. 11. 01.(금) 18:00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內 온라인 신청

○ (접속경로) 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 강소기업 100 신청

* 신청 서류: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원본 서류는 추후 현장평가 시 확인·제출)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
(단,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추천서는 1차평가 완료시까지 제출 가능)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작성 양식) 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강소기업 100 신청 → 강소기업 100 관련 작성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붙임 1)

○ 첨부서류

① **각종 인증서**(유효기간 이내) **및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 사본**
* 창업 후 3년이내 기업: 대표자,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의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② **주주명부 1부**

③ **재무제표** (최근 3개년)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⑤ **소재 · 부품 매출액 검토 확인서* (붙임2)**
*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제출 생략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업로드
**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 스캔파일 업로드

⑥ **대 · 중견기업, 공공기관 추천서* (붙임3)** (해당기업에 한함)
* 추천서에 확인을 받아 스캔파일 업로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로 팩스(0505-020-5032)송부)
** 추천기업은 평가 시 우대 적용

⑦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가능)

4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기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19. 10. 10
⇩		
신청 · 접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사이버영업점 온라인 신청)	'19. 10. 10 ~'19. 11. 1
⇩		
1차평가(서면평가)	▸대상기업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약식기술평가 실시	'19. 11월초
⇩		
2차평가(현장평가)	▸1차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및 선정심사 실시	'19. 11월중
⇩		
3차평가(심층평가)	▸2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평가 실시	'19. 11월말
⇩		
4차평가(선정심의)	▸공개 PT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19. 12월초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차평가(서면평가)

○ **(주요내용)** 강소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기본적인 기술성 검증

○ **(평가방법)**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온라인상에 입력한 기술력 점검 사항에 대한 약식기술평가 실시

□ 2차평가(현장평가)

○ **(주요내용)** 기술력과 사업성,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강소기업 후보를 선정

○ **(평가방법)**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한 기술평가 및 기술혁신전략의 타당성을 평가

<기술혁신전략 평가 항목>

구 분	평가항목
개발기술의 중요성 (30)	① 미래 신산업과 기술의 연관성
	② 국내 기술개발의 시급성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기술개발 전략의 타당성 (30)	③ 글로벌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TRL)
	④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전략 * 빠른 기술개발, 기술혁신의 공유·확산을 위해 대학·연구소, 가치사슬 상 기업 등과 협력하여 R&D역량(기술,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을 연계·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의 계획과 정도를 평가
	⑥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술사업화 가능성 (30)	⑦ 시장진입 가능성
	⑧ 수요처 확보의 안정성 * 수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추천기업의 경우 상위 평가
경제적 성과 (10)	⑨ 생산품목의 수입대체 전망, 수출 전망
	⑩ 생산품목의 매출·고용 신장률 전망

<기술평가시스템(KTRS) 평가 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경영주 역량	기술 수준	동업종경험수준	기술성	기술완성도 및 확장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지식수준			디자인의 완성도
		기술이해도			기술의 자립도
	관리능력	기술인력관리			기술적 파급효과
		경영관리능력	시장성	시장현황	목표시장의 규모
		기술경영전략			시장의 성장성
	경영진 인적구성 및 팀웍	경영진의 전문지식수준		경쟁요인	경쟁상황
		자본참여도			법·규제 등 제약/장려요인
		경영주와의 관계 및 팀웍		경쟁력	인지도
기술성	기술개발 추진능력	기술개발전담조직			시장점유율
		기술(디자인)인력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기술개발 현황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사업성	제품화역량	생산역량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품질관리 역량
		연구개발투자			투자규모의 적정성
	기술혁신성	기술의 차별성			자본조달능력
		디자인의 우수성		수익전망	마케팅역량
		모방의 난이도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투자 대비 회수가능성
		트랜드의 부합도			

□ 3차평가(심층평가)

○ **(주요내용)** 6대 분야* 기술보증기금·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토론평가 실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초화학, 기계금속, 자동차

○ **(평가방법)** 분과별 평가위원 간 심층 토론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 부의

□ 4차심의(최종평가)

○ **(주요내용)** 공개발표 및 평가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강소100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선정

○ **(심의방법)** 공개 발표평가 결과 및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서, 강소기업 선정평가표를 심층 검토하여 강소기업 최종 선정평가를 심의

5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지정 취소

*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 졸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정기간 5년이 종료된 경우

□ 신규지정

○ 지원기간 종료 후, 새로이 강소기업을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전주기 지원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 (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최대 20억원(4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최대 5억원(2년) 최대 24억원(3년)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최대 4억원(2년) (최대 5억원(2년))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R&D 연계 지원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3년)	
		연구기관 인력파견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기술보호	0.5억원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1,0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 0.1~0.2% ↓ (통상금리 2.0~2.8%)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 (일반보증료 1%~1.2%)
	투자	전용펀드	**약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최대 3억원	
합 계			최대 182억원	

※ 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강소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8 설명회 일정 및 장소

구분	지 역	일 시	장 소	주 소
1	경기,인천	'19.10.11(금) 14:00~16: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2	부산,경남	'19.10.14(월) 14:00~16:00	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3	대구,경북, 울산	'19.10.15(화) 14:00~16:00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4	대전,충남, 충북	'19.10.16(수) 15:00~17:00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5	서울,강원	'19.10.17(목) 14:00~16: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제2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	광주,전남, 전북,제주	'19.10.18(금) 15:00~17:00	한국광기술원(광주) 대강당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접수번호		접수일	2019년 월 일

기 술 혁 신 성 장 전 략 서

(강 소 기 업 100 선 정 用)

품목(기술)명						
품목(기술)유형	소재		부품		장비	
6대 핵심분야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HSK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	HSK(4자리)	HSK(6자리)	HSK(8자리)	HSK(10자리)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위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 선정 평가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업체명: 대 표: (인)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귀 하

작성자성명		직위		연락처	H.P)	TEL)	E-mail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기술혁신성장 전략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 대상기업이 작성하는 것으로, **선정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SK코드(10자리)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른 분류코드로 **관세청**에서 확인 - 평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정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담관리기관(기보)은 강소기업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한 기술혁신성장 전략서와 평가자료는 추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등 업무추진을 위해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담관리기관(기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강소기업 선정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경우 전담관리기관(기보)에 문의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기 업 경 영 현 황

1. 개 요

기업체명 (영 문)			대표자 (영문)		E-mail(대표자)	
사업장	본사여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1)				
	□	2)		외 개		
업종명/ 업종코드	/					
품 목 명				용도 및 특성		
상장구분	거래소( ) 코스닥( ) 제3시장( )		기업형태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		

작성 요령	▸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품목명: 기존 생산(판매)품목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업종명 / 업종코드 :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업종코드(5자리) 기재

2. 연혁

연 월	연 혁 (설립,증자,대표자·상호·업종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작성 요령	▸법인기업은 법인 설립후의 자본, 대표자 등 변동상황을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유,무상증자)이 있을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

3. 대표자 등(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경영자등( ))

(단위:백만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동 업 계 종사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휴대전화	
최종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 - 현 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작성 요령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4. 경영진 및 주주현황

- **경영진현황**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생년월일	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근속년수	최 종 학 교	주 요 경 력

- **주주현황**

(단위:백만원)

주 주 명	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 액	점유비(%)	주 주 명	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 액	점유비(%)
				계			
				주가(현재)	시가 : 원 / 액면가: 원		

작성 요령	
	▸법인기업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대표이사(수인인 경우 전부기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기재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와의 관계만을 기재(예시 : 처, 형, 제, 처남 등) ◦ 등기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단순주주의 경우 직위·담당업무는 기재생략 및 주요경력 란에 "비상근" 기재 ▸개인기업 : 대표자(수인인 경우 전부 기재),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직위등을 확인 기재 ◦ 근속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 ◦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소유주식금액(법인기업만 작성) :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작성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단,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상장기업은 당기말 기준) 및 점유비를 기재(주주수가 난을 초과할 때는 "기타 ○명"으로 기재) ◦ 시가·액면가 : 상장기업(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의 경우 기준일 현재 종가와 액면가를 기재

Ⅱ. 영 업 상 황

1. 최근영업상황

(단위:백만원)

매출 (수출) 실적 (현재)	(천불)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수출) 실적 (현재)	(천불)
수주 (L/C) 액 (현재)	(L/C : 천불)

작성 요령	
	▸최근 매출(수출)실적, 수주(L/C)액 :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작성일 또는 최근 월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 ◦ L/C보유현황 및 수주액은 신용장 및 order(계약서)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 기재

2. 매 출 현 황

(단위:백만원)

품 목 \ 기 간		2016년(전전기)	2017년(전기)	2018년(당기)
		~	~	~
계(수출실적)		(천불)	(천불)	(천불)
반기별 실적	상반기	(천불)	(천불)	(천불)
	하반기	(천불)	(천불)	(천불)

작성 요령	
	▸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 (예시1) 설립:2007. 9. 3. 평가신청:2010. 3. 3. ⇨ 2007. 9. 3 - 2007. 12. 31 | 2008. 1. 1 - 2008. 12. 31 | 2009. 1. 1 - 2009. 12. 31 (예시2) 설립:2009. 7. 8. 평가신청:2010. 3. 3. ⇨ 2009. 7. 8 - 2009. 12. 31 ▸품목별 비율 큰 순서대로 기재(상품매출·용역수입이 있을 경우 구분기재) 및 품목별 구분 곤란시 합산 기재가능(품목별 매출실적의 합계액은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함) ▸수출실적에는 외화금액(U$)만 기재하되, 원화는 합계에 포함 기재

3. 주요거래처

(단위:백만원)

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간거래액	주요품목	거래기간	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간거래액	주요품목	거래기간
매출처	(- -)				외주가공	(- -)			
	(- -)					(- -)			
	(- -)					(- -)			
	계		약 개업체			계		약 개업체	

작성요령	▸당기말(년도 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 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

Ⅲ. 기 술 혁 신 성 장 전 략(생산 또는 개발중인 기술)

1.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사업 개요

기술(사업)명				개발방법	□단독 □공동
개발(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개발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부
권 리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	제품화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		
권리상태	□출원중 □등록				
등록(출원)번호					

작성요령	▸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2.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기술)의 내용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1) 기술 성장 전략

(가) 품목(기술)의 개요

○
○
○
○

(나) 품목(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

○
○
○
○

(다) 기술개발필요성 및 적정성

○
○
○
○

(라) 국내외경쟁사 품목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
○
○
○

(마) 기술성숙도(TRL)

○
○
○
○

(바) 산학연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

○
○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별표1 기술유형별 기술성숙도(TRL)의 정의

TRL 단계[1]			단계별 정의
기초연구	1	【기초실험】 기본원리발견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개념정립】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3	【기본성능검증】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제품	5	【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 확정된 공법/재료/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	【시제품 성능평가】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 파일럿 규모(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생산수율,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실용화	7	【시제품 신뢰성평가】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시제품 인증】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양산	9	【사업화】 상용제품생산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1) TRL 단계별 정의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시장동향 및 파급효과

(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단위:백만원)

연도별(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선도기업명
시장 규모	국내						
	해외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
○
○

(나) 국내외 동업계 현황 및 경쟁 상황

○
○
○
○

(다) 주요 수요처 매출 실적 및 수요 전망

○
○
○
○

(라) 경제적 파급효과

○
○
○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3) 사업화 전략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가) 개발완료 및 제품화 시기

○

○

○

(나) 설비 도입 및 양산 착수

○

○

○

(다) 매출전망

○

○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4) 판매 및 계획 전략	(단위:백만원)

※소재·부품·장비관련 품목 중심으로 작성

(가) 판매 계획

판매계획	품 목 명		판매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당해 기술 사업 관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시장판매						
	계								
마케팅	전담팀(조직)보유여부						전담인력수		
작성요령	▸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을 판매처 업태(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시장판매)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나) 판매 전략

ㅇ(예상)판매처

ㅇ(예상)품목 수요

ㅇ홍보 및 판로확보 전략

ㅇ수출 전략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3. 추정요약손익계산서(당해기술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매출액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 )	( )	( )
매출총이익			
판매및관리비 (감가상각비)	( )	( )	( )
영업이익			
<추정근기>	(연도별 매출추정 및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인 근기를 기반으로 작성)		

Ⅳ. 기 술 개 발 현 황

1. 기술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전담조직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기술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기술개발연구실 (기업자체운용)
인정일자			

담당분야	직 위	성 명	연령	최종학교 및 전공	입사년월	보유자격증	해당 기술분야 근무년수

작성요령	▸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 ▸기술개발인력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2. 기술개발인력 현황(위의 기술개발 인력별로 각각 작성하며, 인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입사년월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전공분야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고등학교	
	년 월	년 월	대학교	대학교	과
	년 월	년 월	대학원	대학원	과(세부전공:)

주요 경력	부 터	까 지	근무처	업종	담당업무	최종지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	

작성요령	▸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작성 생략 ▸각 인원별로 상기 표를 복사하여 기재요망

3. 기술개발실적(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포함한 기업의 전체 기술개발 실적)

(단위: 백만원)

(1) 개발 과제 및 내용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 기간	개발 수준	개발 비용	매출 규모	수상/취득권리/인증	기술상용화 여부

작성요령	▸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2) 회사보유 기술권리

(회사 보유 중인 모든 산업 재산권 관련)

(가) 회사보유 산업재산권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품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 해외특허도 기재)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실용신안
	□ 등록 ( )건 □ 출원 ( )건	□ 등록 ( )건 □ 출원 ( )건
	□ 디자인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기술임치증 보유 ( )건

산업재산권 내용 입력						
권리종류	등록구분 (등록/ 출원)	등록번호	기술내용	등록(출원) 일자	권리자	발명자

(나) **회사보유 각종 권리** (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품질규격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

품질 규격 및 인허가	국내공인규격	건	
	국외공인규격	건	
	기술인증	건	
	품질관리수준	건	
	기타	건	
	각종 인허가명	건	

4. 기술개발용 연구기자재 및 생산시설 보유현황

(단위:백만원)

용도(개발/생산)	시 설 명	수 량	내용연수	장부가액	비고
합 계					

작성요령	▸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토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순으로 기재 ▸내용연수: 제조일자 기준으로 작성

(붙임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_____대표이사 귀하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소재지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소재 · 부품 또는 장비명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연번	제품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HSK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원화)	합계
1						
2						
3						
4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B)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 (B/A)			%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검토기관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상기 소재 · 부품 매출액 명세가 소재 · 부품 및 그 장비 매출을 기업회계기준과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 격 증	한국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직인)
검토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번호)

첨부서류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2. ①공장등록증명서, ②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만 제출) ③위탁제조계약서 위 ①,②,③ 중 택일하여 제출

※ **작성요령:**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후 스캔파일을 홈페이지에 첨부서류로 업로드

(붙임3)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추천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추천서

1.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 표 자	
본사 소재지	(Tel)		
사업장 소재지	(Tel)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개업)일자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	
		주 제 품	

2. 품목(기술) 개요

품목(기술)명							
품목(기술)유형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기타
HS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	HS(4자리)	HS(6자리)	HS(8자리)	HS(10자리)			

3. 기술개발 및 사업계획

기술개발 구분	국산화(수입대체)	신규개발	기술(공정) 개량	
사업화단계	연구개발	사업화준비	양산	기타

4. 추천의견

* 대·중견기업 소속 계열사는 추천 불가

20 . . .

추천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인)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직접추천) (인)

중소기업부장관 귀하

(붙임4) 소재·부품전문기업 관련 법상 소재·부품의 범위

소재 · 부품의 범위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 · 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1310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1321
	염색 · 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1340
	부직포 및 펠트	13992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20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20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20129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
	합성고무	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20302
	농약 원제 및 중간체	20412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20421
	공업용 인쇄잉크	20423
	계면활성제	20431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안 된 화학제품	20499
	화학섬유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22111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22191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2219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22212
	극세사 합성피혁	22213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22240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23110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판유리 가공품	23122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23129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23213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23221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23312
	연마휠	23992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23993
	공업용 내화 단열재	23994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999
제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24113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24122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24123
	주조한 관 연결류	24131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24132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24191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24199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2421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2431
	비철금속 주조제품	24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25121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25122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25130
	무기 부품	25200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2591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2592
	톱 및 호환성공구	25934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1
	금속스프링	25942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261
	기타 전자부품	262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2632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264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27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272
	광섬유 및 광학요소	2732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27322
	기타 광학기기 부품	27329
	시계 부품	27402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281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28201
	축전지	28202
	광섬유 케이블	28301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28302
	전구 및 램프 부품	28410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2842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28511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8520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28902
	교통신호장치 부품	28903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2911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2912
	펌프 및 압축기	291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29133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2914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29150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2916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29171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29173
	기체 여과기	29174
	액체 여과기	29175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9176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29180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2919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30110
	자동차 부품	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31114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3120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313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31310
	전투용 차량 부품	31910
	모터사이클 부품	31920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1991
가구 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